

학회지 게재논문 심사규정

제정 1997. 7. 1

개정 2001. 6. 16

개정 2003. 6. 28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환경법학회(이하 '본회'라 칭한다) 회칙 제26조(학술지 편집위원회)와 제27조(학술지의 편집·간행)에 의거하여 본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위한 학회지 편집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호) 학회지의 제호는 '環境法研究'라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본회의 총무이사, 연구이사, 출판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업무) 본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회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
2.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
3.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

제6조(논문심사의뢰)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회칙 제26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논문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.

③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한다.

④ 학회발표논문은 회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게재할 수 있다.

제7조(논문심사기준)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.

1. 논문내용의 충실도
2. 논문의 창의성 및 논리 전개
3.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
4.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

제8조(심사판정) 심사위원은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.

1. 수정이 필요 없을 때 : ‘수정 없이 게재함’
2.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 : ‘수정 후 게재함’
3. 전면적 수정이 필요할 때 : ‘게재를 유보함’

제9조(심사결과 통보)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
②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다수의견에 의한다.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본회의 출판간사로 한다.

제11조(규정개정) 본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